

본회, 양돈업 등록규모 200두 이상 상향 조정 강력 주장

양돈업 허가상한은 모돈 1,000두로

– 정부주최 제4차 축산업심의위원회에서

– 홍보부 –

축산업의 규모에 관한 사항과 축산업의 허가상한기준, 축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발족된 축산업심의위원회 제1차회의가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지난 9월 12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축산업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본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해 1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인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의 주재로 ▲축산업의 등록대상 기준 ▲축산업 허가기준 및 허가상한 기준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은 현행 양돈업 등록기준인 모돈 50두 이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대비해 모돈 200두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양돈업 허가상한선을 모돈 1,000두로 해 줄 것 등 협회의 공식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또한 전동용 회장은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도 자산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축산업 이외의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위원 다수의견은 등록규모 모돈 100두, 허가상한선 모돈 1,000두

이밖에도 경제기획원 등 정부관계자와 업계를 대표한 위원들 대부분도 양돈업 등록규모를 현행 모돈 50두 이상에서 100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나타냈고, 허가기준과 허가상한은 정부의 안대로 모돈 500두 이상, 모돈 1,000두로 하자는 대부분 찬성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는 양돈업 등록 규모와 관련, 등록규모를 모돈 100두나 200두 이상으로 할 경우 사육동향 파악과 수급조절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행대로 모돈 50두 이상을 등록규모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농림수산부는 양계업의 등록규모와 관련, 양계업의 등록규모는 현행대로 산란계는 3만수 이상, 육계는 1만수 이상을 등록토록 하고, 대신 중병아리 1만수 이상과 낙농업의 경우 착유우 30두 이상을 신규로 등록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림수산부는 양돈업의 허가기준은 현행 대로 모돈 500두 이상으로 하고, 허가상한기준은 모돈 1,000두로 하자는 의견을 나타내 업계와 같



1,000두 규모의

자본 평가액, 즉 자본평가액이 25

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축산업 이외의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이같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1개 기업 또는 1인이 타기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여러개의 농장을 경영하는 것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한편 양돈업등록제도는 '84년 축산법 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또 등록 대상규모의 불만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또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축산법이 개정될때 국회에 상향조정 검토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양돈업 등록업자들은 모든 1,000두 이상 대기업 양돈장에는 계열화다, 수출이다, 종돈이다 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특혜를 주어온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등록업체에 대해선 등록규모의 변경도 잘 허용해 주지 않고 일방적인 감축명령과 초과사육부과금 부과 등으로 있어 정부정책에 강한 불신을 나타낸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이유가 아니라도 실제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최근과 같은 양돈불황기에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의때 경제기획원 관리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이제 등록규모에 대한 사육규제로 정부주도의 수급조절 정책을 펴 나갈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은 축산업 참여금지 대상기업이 명확하고 관리가 용이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계열집단 계열기업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 은행감독원의 「예산관리세칙 제2조」의 계열기업군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 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엔 총자산 4,000억원 이상인 43개집단 672개 기업이 해당되고, 계열기업군은 총여신 1천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58개 집단 905개 기업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연간 국내출하액 300억원 이상인 업체로 현재 131개 품목 307개 업체가 해당된다.

자본 25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축산업 외의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축산참여 금지시켜야

그러나 본회 전동용 회장은 축산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자본에 의한 기업체의 축산업 신규참여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돈업 허가상한규모도 이론이 없는 모돈

〈표〉 양돈업 등록·허가기준 및 축산업 참여금지 대상 기업 기준

항 목	농림수산부(안)	양돈협회(안)	축산업심의위원회 다수 의견
등록 규모	모돈 50두 이상	모돈 200두 이상	모돈 100두 이상
허가 기준	모돈 500두 이상	모돈 500두 이상	모돈 500두 이상
허가상한기준	모돈 1,000두 (종돈업 제외)	모돈 1,000두 (종돈업 포함)	모돈 1,000두 이상 (종돈업은 언급없음)
축산업 참여금지 대상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기업집단(총자산 4,000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개집단 672개 기업 ◦ 계열기업군(총여신 1,50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집단 905개 기업 ◦ 시장지배적 사업자(연간 국내 출하액 30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개 품목, 307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축산업 이외의 비중이 50%인 기업(모돈 1,000두 규모의 자본 평가액은 25억원 수준) 	협회안

등록규모 모돈 200두는 정부의 '96년 국민소득 1만불 정책과도 부합

이밖에도 정부가 제시한 '96년도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을 계획을 감안할 때 5인 가족 기준 호당 연 소득 3,350만원을 올릴려면, 비육돈 1두 출하시 1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때 모돈 200두가 적당하다. 또한 향후 정부의 축산장 기발전 계획에서도 나타났지만, 향후 10년간 현재의 26만 양돈농가중 59%인 16만호가 탈락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업화 추세는 가속화 될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될 경우 모돈 200두 사육 농가 수도 크게 증가해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하는 돈육 사육동향파악과 수급조절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양돈업을 비롯한 축산업은 농민고유의 업종이라는 인식 하에 축산업 참여금지 대상기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작년에 축산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부합된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양돈업 등록규모와 허가 상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마련돼 앞으로 규모간 갈등없이 양돈업계가 국제경쟁력 향상에 총

매진하게 되길 바란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날 축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축산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심의위원 명단

▲위원장 : 이병기(농림수산부 차관)

▲부위원장 : 조규일(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위원 : 이기호(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김정호(재무부이재국장), 신구범(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박운서(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조기우(보사부 위생국장) – 이상 당면직 5명 –

전동용(대한양돈협회 회장), 정태원(대한양계협회 회장), 이윤우(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송찬원(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이창림(축협중앙회 이사), 김병두(농협중앙회 이사), 전우홍(대구경북양돈조합장), 강희구(서울경기양돈조합장), 김정남(경남우유조합장), 윤희진(돼지사육농가), 김영환(닭사육농가), 박종남(소사육농가), 유철호(농촌경제연구원 축산개발실장) – 이상 위촉직 13명 –